



22 | 거제시

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지원

- 대상 : 결혼이민여성 출산가정 (첫째아부터 지급)
- 내용 : 출생아 1명당 10만원 지원
- 신청 : 면·동 주민센터 (*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문의 : 가족정책과(639-4393)

23 | 경남

경상남도 산후조리비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) 지원

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 - (서비스 신청일 기준)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
 - *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
 -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- 내용 :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)
 - 출산일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
- 신청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보건소 방문
- 문의 : 건강증진과(639-6295~6)

24 | 경남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- 대상 :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- [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,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5.18 민주유공자,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포함), 다문화가족 산모, 새터민 또는 그배우자, 한부모가족의 산모]
- 내용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% 지원(2주간 이용료 기준)
- 신청 : 보건소 방문신청
- 문의 : 건강증진과(639-6293)

25 | 경남

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

- 대상 : 관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
- 내용 :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(영어) 관련 작업 및 가사일(출산도우미)포함하여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 지원
- 신청 및 문의 : 농업정책과(639-6317)

26 | 전국
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
- 대상 :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
 - ①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미숙아
 - ②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(Q코드)로 진단받고,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
- 내용 :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한도 내 지원
- 신청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
- 문의 : 건강증진과 (639-6294)

27 | 전국

미혼모·부 출산·양육지원

- 대상 :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
- 내용 : 병원비(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·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), 양육용품(분유, 기저귀, 계절에 따른 내의·겉옷, 유모차, 보행기, 장난감 등)
- 신청 및 문의 : 거제시가족센터(682-4958)

28 | 거제시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-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(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인 자, 신생아는 거제시에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
- 내용 :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최대 20만원 한도) (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% 전액 지원)
 - ※ 출산일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중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보다 유리할 경우 지원(중복 지원 안됨)
- 신청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
- 신청문의 : 건강증진과(639-6295~6)

29 | 전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-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출산 가정
 - ※ 예외지원 대상 : 중위소득150% 초과 가정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
- 내용 :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제공 (지원기간 및 정부지원금,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별 상이)
- 신청 :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(온라인)
 - ※ 신청기간 :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- 신청문의 : 건강증진과(639-6295~6)

30 | 거제시

산후조리비 지원

- **대상** : 출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(단, 1년의 전입기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)
- **내용** : 30만원 지원
- **신청** : 면·동 주민센터(방문), 정부24(온라인)
- **문의** : 건강증진과(639-6293)

31 | 경남

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

- **대상** : 직전연도 10. 1. 이후 출산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여성농업인
- **내용** : 여성농업인의 출산 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
- **신청 및 문의** : 농업정책과(639-6317)

32 | 전국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- **대상**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(임신기간 4개월 이상)한 자(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원불가)
- **내용** :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(24년 출산부터 적용)
- **신청** : (방문) 주소지 면·동 주민센터(온라인) 정부24 또는 복지로
- **문의** : 노인장애인과(639-3814)

33 | 거제시

영양플러스 사업

- **대상** : 기준중위소득 80%이하로 관내 영유아 및 임신부, 출산수유부
- **내용** : 취약계층 영유아 및 임신부, 출산수유부에게 보충영양식품 제공
- **신청** :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 예약전화 후 방문(월,수,금)
- **문의** : 건강증진과(639-6186)

34 | 거제시

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

- **대상** :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, 응급상황의 임신부 등
- **내용** : 분만응급환자 1회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 이송비용 지원
- **신청 및 문의** : 건강증진과(639-6292)

35 | 거제시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
- **대상** :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
- **내용** :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(단,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및 「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」 따른 출산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차액만 지급)
- **신청** : 면·동 주민센터(*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**문의** : 노인장애인과(639-3814)

36 | 전국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- **대상** : - 기저귀 : 만 2세 미만(0~24개월)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 가족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(2인이상) 가구
- 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산모의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
- **내용** : 기저귀 월 90천원, 조제분유 월 110천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- **신청** : 보건소 및 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(온라인)
- **문의** : 건강증진과(639-6295~6)

37 | 전국

첫만남 이용권 지원

- **대상** : 2024. 1. 1. 이후 출생아
- **내용**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
- **신청** : (방문) 주소지 면·동 주민센터(온라인) 복지로 또는 정부24
- **문의** : 가족정책과(639-4934)

38 | 거제시

출산장려금 지원

- **대상** :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
①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
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

• 내용

지원방식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 이상
선불카드(NH카드) 반기별지급	100만원 (50만원씩 * 2회) (1년간)	300만원 (75만원씩 * 4회) (2년간)	800만원 (100만원씩 * 8회) (4년간)
(신청기한) 만1세 이후~1년 이내 (카드 사용기한) 2026.12.31. ※ 2022년 : 만1세 이후 ~ 만3세 이전까지			

- **신청** : 아동 주소지 면·동 주민센터 또는 '24년 4월중 행복e음(오픈마켓)을 통한 신청 가능(시스템 구축중)
- **문의** : 가족정책과(639-4934)

39 | 거제시

출산 축하용품 지원

- **대상** :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
- **내용** :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용품(신생아 털목도리) 전달 지원
- **신청** : 면·동 주민센터
- **문의** : 가족정책과(639-4393)
※ 출산축하용품 지원 :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(다행공예반) 제작 제공

해산급여

- 대상 : 생계 · 의료 ·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
- 내용 : 1인당 700천원
- 신청 : 면 · 동주민센터,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
- 문의 : 사회복지과(639-3723)

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

- 대상 : B형간염 표면항원(HBsAg)양성 또는 e항원(HBeAg)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(2011. 1. 1. 이후 출생자)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*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
*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(HBsAg) 양성 또는 e항원(HBeAg) 양성결과
- 내용 : ①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,
② B형간염 예방접종 3회,
③ 항원 · 항체 정량검사 1차 비용 지원
※ (추가지원) 항원 ·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(최대 3회) 및 재검사(최대 2회) 지원
- 신청 : 위탁의료기관*
*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<http://nip.cdc.go.kr>)에서 확인 가능
- 문의 : 감염관리과(639-6285)

